

# 공원관리규정

제정 1986. 1.16 규정 제 38호	2006. 1. 9 규정 제534호
개정 1986. 6.25 규정 제 47호	2007. 6.15 규정 제585호
1990. 2.20 규정 제 78호	2008.12.11 규정 제616호
1992. 4. 3 규정 제123호	2009.12.10 규정 제646호
1993.11. 9 규정 제145호	2011. 3.21 규정 제667호
1995. 5.31 규정 제187호	개정 2016. 7. 12 규정 제813호
1996. 9.25 규정 제219호	2016.11.18 규정 제838호
1997. 9.27 규정 제253호	2017. 4.26 규정 제888호
전문개정 1999. 8.20 규정 제295호	2017.11. 1 규정 제916호
2003.11. 7 규정 제450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원은 물론 녹지 또는 도로라 할지라도 공원의 명칭을 부여하여 공단이 관리하는 모든 공원 및 공원시설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대행)** 서울어린이대공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유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제에 따른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9, 2008.12.11)

**제4조(근무제도)** 원장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본사의 경우와 달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제5조(개방시간)** ①공원의 개방운영시간은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08.12.11)

②공단 이사장은 공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원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제2장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

**제6조(공원시설의 관리위탁)** ①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6조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관리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탁관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 2016.7.12.)

②전항에 의거 공단이 공원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기준, 위탁료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공단이 공원시설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증서를 수탁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공원의 점용허가)** ①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9조에 의하여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1)

- ②점용허가에 따른 점용료의 결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1.3.21)
- ③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점용허가증을 수허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1)
- ④원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원점용허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및 점용허가 조건)** 공단이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한 허가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공원사용료 및 납부방법
4. 보험료 또는 공제료 납부 사항 (본호개정 2016.11.18)
5. 허가증서의 점포내 게시 의무
6.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및 관리유지 의무
7. 허가시설에 대한 부담금의 사용자 부담
8. 공원시설에 대한 연고권 배제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시설의 관리)** ①제6조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수탁받은 관리자는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판매 품목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하며, 공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06.1.9, 2008.12.11)

- ② ('06.1.9 삭제)
- ③어린이 교육 및 건강을 위해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품목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08.12.11, 2009.12.10, 2011.3.21)
- ④수탁관리자는 판매상품의 가격을 이용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가격표를 게시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9, 2011.3.21)
- ⑤ (삭제 2008.12.11)
- ⑥공단은 수탁관리자가 본 규정을 준수치 않았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1. 주의 환기
  2. 시정조치 또는 경고
  3. <삭 제> (2011.3.21)
  4. 관리위탁 취소(또는 계약의 해지) (개정 2011.3.21)

### **제3장 온실식물관리**

**제10조(온실 식물의 분류)** ①이 장에서 온실식물(이하 “식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식물원내에서 배식 또는 관리하는 식물을 말한다.

- ②식물은 관엽류, 난류, 양치류, 다육식물류 및 기타식물로 구분하며 1년초는 제외한다.('99.8.20)

**제11조(식물대장 등)** ①원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식물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번식된 식물은 15cm부터 식물대장에 등재한다. 다만, 선인장과 소철류는 10Cm부터, 분재는 근원경

3cm부터 등재한다.(‘99.8.20)

**제12조(매각)** 원장은 식물의 수량조정을 위하여 식물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99.8.20, 2009.12.10)

**제13조(대여)** 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식물을 대여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또는 공단의 주요행사시(‘99.8.20)
2.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99.8.20)

**제14조(무상분양)** 원장은 서울시 및 공단의 환경미화에 필요한 때 또는 학교, 연구기관 등이 교육목적으로 분양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분양할 수 있다.(‘99.8.20, 2009.12.10)

**제15조(기록관리)** ①원장은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을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분양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매각기록부와 제9호 서식에 의한 온실식물 대여 및 무상 분양 기록부에 품명,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제4장 동물관리

**제16조(동물분류)** ①공원에서 사육하는 동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포유류 2. 조류 3. 어류 4. 기타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류된 동물은 희귀성 및 가치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신설 ‘97.9.27)(‘99.8.20)
  1. 갑 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부속서 I 해당동물 및 평가액 1억원 이상의 동물 (본호개정 ‘03.11.7, 2008.12.11)
  2. 을 류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부속서 II 해당동물 및 천연기념물 (‘03.11.7 본호개정)
  3. 병 류 : 갑류 및 병류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타의 동물 (‘03.11.7 본호개정)

**제17조(동물대장 등)** ①원장은 동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99.8.20)

1. 동물분류별 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개체별카드 (별지 제11호 서식)
3. 갑류카드(별지 제12호 서식)
4. 동물증감통계 (별지 제13호 서식)
- ②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체별 카드는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나 제16조 제2항 제3호 중 경미한 동물은 카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97.9.27)
- ③관리자는 번식, 구입, 교환, 채집, 수증 등의 원인으로 새로이 사육하게 되는 동물 및 폐사, 기증과 같이 동물의 입출시 원인별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록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99.8.20)
- ④새로이 사육하게 되는 동물은 소정의 검역, 통관 조치 후 일정한 순치, 보육 및 육추기간(60일)이 경과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분류별 대장에 등록한다.(‘99.8.20)

**제18조(동물의 수 조정)** ①공단 이사장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해서 생태적 연관 및 동물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매, 교환, 수증, 증여, 번식, 근절, 도태 방사 및 동일 회계기관으로의 관리전환, 타 회계기관으로의 양여 등의 방법으로 사육하는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 회계기관으로의 양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97.9.27, ‘99.8.20)

②제1항에서 제외되는 동물은 원장이 동물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증여 또는 타 회계기관으로의 양여는 푸른도시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97.9.27)<단서신설 2017.11.1>

**제19조(비상조치)** 원장은 사람과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99.8.20)

1. 사육동물이 사육사 내에서 또는 사육사 밖으로 탈출하여 관리인 또는 관람객의 인명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절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동물을 사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2. 사육동물 상호간의 투쟁, 나쁜 버릇 등으로 사람과 타동물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절각, 격리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사료의 규격 및 검수)** ①공원에서 취급하는 사료의 품목별 규격은 원장이 따로 정하며 반입시 검수는 이 규격에 의하여 실시한다.(‘97.9.27)

- ②품목에 없는 사료의 구매시 규격은 중품이상의 품질에 준한다.
- ③ (‘03.11.7 본항삭제)

**제21조(급식기준 및 급식계획)** 각 동물의 일일급식 사료량은 원장이 따로 정하며, 급식계획 및 급식량을 일정주기별로 수립하여야 한다.(‘97.9.27, ‘99.8.20)

**제22조** 삭 제(‘97.9.27)

**제23조(사료품목 및 급여량 변경)** ①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료의 품목 및 급여량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별도로 특별사료를 급식할 수 있다.(개정 ‘99.8.20, 2008.12.11)

1. 영양분석 및 자료조사 결과에 따른 최적의 급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자 할 때
  2. 사육동물의 연령, 성별, 임신, 분만, 이동, 질병, 비만, 계절 및 그 밖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료의 시장출하가 없거나 가격 급등이 예상될 때
- ②동물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일일사료급여품목 및 수량에 과부족이 생길 때에는 타동물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품목, 급여량 및 구매규격을 초과 또는 감량 급여할 수 있다.

**제24조(진료실 운영)** ① 사육사는 1일 1회 이상 소관동물의 건강상황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진료의뢰서 또는 별지 제15호의2 서식에 의한 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진료담당수의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97.9.27)<개정 2017.11.1>

②진료담당 수의사는 사육사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진하여 진료 또는 부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97.9.27) <개정 2017.11.1>

③진료담당 수의사는 진료실에 동물치료에 필요한 기구 및 약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 서식의 동물진료일지를 기록 유지한다.('97.9.27) ('99.8.20)('07.6.15)<개정 2017.11.1>

**제25조(회진 및 방역)** ①수의사는 1일 1회 이상 사육동물을 회진하고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치료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수의사는 전염병의 발생 및 만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입동물의 검사와 적기에 예방접종 및 소독실시 등 방역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전염병의 발생으로 사육동물 전체에 커다란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염동물을 도태시킬 수 있다.('99.8.20)

**제26조(발병 또는 폐사에 대한 면책)** 선의의 관리 또는 치료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육동물이 다음과 같은 원인으로 발병 또는 폐사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에게 대한 책임은 묻지 아니한다.('99.8.20)

1. 원인불명의 난동을 피우거나 동물간의 우위다툼으로 실족, 전도, 추락, 내출혈 등의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한 발병, 사고, 폐사 등
2. 동물의 포획, 치료목적의 동물의 보정 또는 치료 중에 발생하는 충격사
3. 삭제 <'99.8.20>

**제27조(폐체의 처리)** 사육동물의 폐체는 매장 또는 소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폐체의 상태에 따라 수의사의 판단에 의해 가용한 것은 동물의 사료로 대체급식할 수 있으며 전염병의 전이 또는 그러한 의심이 있는 병에 의한 폐체는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99.8.20)

**제28조(폐체의 활용)** ①교육자료로 활용가치가 있는 동물의 폐체 또는 폐체의 특정부분은 표본으로 제작, 보존할 수 있다.('99.8.20)

②표본으로서 이미 충분히 확보된 동물의 폐체(폐체의 특정부분 포함)는 학술기관 기타 필요로 하는 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가격평가)** 원장은 사육동물을 매년말 현재로 가격평가하여 기록, 보존 한다.('99.8.20)

## 제5장 시설관리

**제29조(시설물 대장)** 원장은 공원 내 주요시설 및 재산에 관한 기본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03.11.7, '09.12.10)

**제30조(수목관리)** ① 공원내 수목은 임의로 제거할 수 없다.

②원장은 풍설해, 병충해 기타 사유로 도괴 위험이 예상되는 수목은 제거해야 한다. (개정2009.12.10)

③전항의 규정에 의거 수목을 제거하였을 경우 그 증빙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되 주요 수종은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한다.('03.11.7 본조개정)

## 제6장 차량통행 관리

**제31조(정의)** 이 장에서 “차량”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말한다.('06.1.9

신설)

**제32조(차량통행관리)** ①원장은 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 편의제공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출입 차량의 통행을 관리하여야 한다.(‘06.1.9 신설)

②원장은 공원 내 출입차량의 통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06.1.9 신설)

## 제7장 보칙

**제33조(정기보고 등)** 원장은 다음사항을 정기 보고해야 한다.(2009.12.10)

1. 온실식물 증감 현황 ..... 익년 1월 10일
  2. 동물 증감 현황 ..... 익월 5일
  3. 공원 이용자 현황 ..... 익월 5일
  4. 세입금 징수 현황 ..... 익월 5일
- (‘03.11.7 본조개정)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함께 종묘앞공원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 부 칙(1992. 4. 3)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3.1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7. 9.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1999. 8.2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03.11. 7)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1.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6. 15)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2. 10)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3. 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03.11.7 삭제)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관련)(개정 2008.12.11, 2016.7.12.)

제 호				
( 도시공원 · 공원시설 ) 수 탁 관 리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명 칭)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치 및 면적 규모				
관 리 방 법 개 요				
수 탁 관 리 기 간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공단 이사장 귀하</p>				
구비서류 :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관련)(개정 2008.12.11, 2016.7.12.)

제 호				
( 도시공원 · 공원시설 ) 관리위탁증서				
신청인	성명(명 칭)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공원의 종류 및 명칭				
공원시설의 종류 및 명칭				
위탁사항	위 치			
	면 적			
	규 모			
	기 간			
조 건				
<p>「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시공원(공원시설) 관리를 위탁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인)</p>				







[별지 제5호 서식] (제7조 관련)(개정 2008.12.11, 2016.7.1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명(명 칭)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공원의 명칭				
허가 사항	점용 면적			
	장소 및 면적			
	시설 규모			
	기간			
조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제11조 관련)

식 물 대 장

식 물 명		NO.	
학 명		사 진	
과 명	원 산 지		
재 배 법			
특 징			
비 고			



[별지 제10호 서식(전면)] (제17조 관련) (개정 2016.7.12.)

### 동 물 분 류 별 대 장

동 물 명 : \_\_\_\_\_ 학 명 : \_\_\_\_\_  
 고유번호 : \_\_\_\_\_ 영 명 : \_\_\_\_\_

년 월 일	증 가					감 소					증감수				현재수				적 요
	번 식	구 입	교 환	채 집	수 증	폐 사	매 각	교 환	양 여	도 태	↑	♀	미 상	계	↑	♀	미 상	계	

[별지 제11호 서식] (제17조 관련)

### 개 체 별 카 드

고유번호 : \_\_\_\_\_ 동물명 : \_\_\_\_\_ (성별: \_\_\_\_\_)

<p><u>일 반 특 성</u></p>	<p>사           진</p> <p>(    년   월   일   촬영)</p>
별 명	영 명
입식일자	학 명
입식경위	분 류
생년월일	분 포
사 료	기 타





진 료 의 퇴 서

○ 동 물 명 :

○ 마 리 수 : (성별 : )

○ 사육장소 :

○ 상태(증상) :

**【붙임】** : 개체이력카드 또는 개체번호

위의 동물에 대하여 진료를 의뢰하오니 조치바랍니다.

20 . . .

보고자 : (인)

# 폐 사 보 고 서

- 동 물 명 :
- 마 리 수 :                   (성별 :                   )
- 장 소 :
- 경 위 :

【붙임】 : 개체이력카드 또는 개체번호

위의 동물이 폐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20 . . .

보고자 :

